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결핵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☐ 결핵관리업무 위탁 가능 기관 범위 명확화

- 「결핵예방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르면 결핵관리업무를 전문인력 등을 갖춘 “비영리법인”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“비영리법인”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
- 결핵관리업무에 대하여 수탁 가능성 있는 관련 분야 학술단체는 통상 법률상 법인격 없이 세법상 “법인으로 보는 단체” 지위로서 운영 중
-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결핵관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해서는 “비영리법인”의 범위를 「민법」 등 법률상의 법인 뿐만 아니라, 세법상의 “법인으로 보는 단체”로 폭넓게 보는 것이 필요
- 더불어, 상위규정인 「결핵예방법」 제30조제2항에서 위탁 가능한 대상을 법인보다 확장된 개념인 단체 또는 관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적극 반영할 필요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비영리법인”을 “비영리법인(이 조에서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제4항에 따른 “법인으로 보는 단체”를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질병관리 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 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<u>비영리법인</u>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	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비영리법인</u> <u>(이 조에서 「국세기본법」 제1</u> <u>3조제4항에 따른 “법인으로 보</u> <u>는 단체”를 포함한다)---</u> 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 - 7326